

C&MA 한인총회 선교 업무 세칙

본 시행세칙은 제22차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여 한인총회 해외 선교 사역의 활성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제정한다.

제1조 (명칭) 본 세칙은 “C&MA 한인총회 선교 업무 세칙 (이하 ‘선교세칙’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선교세칙은 C&MA 한인총회 해외 선교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며, 총회 소속교역자로 한인총회 소속교회에서 파송 받아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교사의 분류) 본 총회와 관계를 맺는 모든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C&MA 파송선교사

C&MA 해외선교부(IM)에서 파송하여 IM의 전적인 지원과 통제를 받는 선교사

2. 총회 관련선교사

본 총회에서 공식사역자증을 발급 받고 한인총회 소속 교회의 파송을 받아 다른 단체와 관련을 맺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해외선교사역에 종사하는 선교사

제4조 (선교사의 자격) 본 총회 관련선교사의 자격과 분류는 파송교회의 요청을 받아 총회 선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가 인준한다.

제5조 (선교사의 의무) 모든 총회 관련선교사는 파송교회와 한인총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지며 실행위원회가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총회와의 관계를 중지할 수 있다.

1. 선교보고

선교사는 적어도 6개월에 한번 파송교회에 선교지 소식을 알려야 하며, 매년 파송교회와 총회에 선교사역의 개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선교사는 주소와 신분, 기타 신상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파송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선교헌금

선교사가 C&MA 한인총회 소속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헌금 내역을 매년 파송교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선교사는 교회나 교단의 질서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재정 지원을 호소해서는 안된다.

제6조 (선교사의 지원) C&MA 한인총회는 각 선교사의 분류에 따라 선교사를 위한 영적 물적 지원을 한다.

제7조 (선교사의 사역) 총회관련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파송교회와 각 선교사의 사역 의사를 존중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부칙)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선교관계 세부사항은 파송교회 및 선교사와 협의하여 실행위원회가 결정한다.